

일본 통계조직 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 출장 결과

I

개 요

1. 출 장 명

- 일본 통계조직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2. 출장기간 및 출장지

- 출장기간 : 2012. 12.13.(목) ~ 12.15(토)
- 출 장 지 : 일본 총무성 통계국

3. 출장 목적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에서 지방통계청의 지방이양을 검토하는 바, 이에 일본 통계조직(중앙통계기관, 지방통계기구)의 운영 현황 파악 및 관련자료 수집이 필요

4. 참 석 자

- 한국 통계청
 - 행정관리담당관 이명호
 - 물가동향과장 안형준
 - 행정관리담당관실 이무영 주무관
 - 품질관리과 최기영 주무관

Ⅲ 회의내용(질의 및 답변사항)

□ 일본 통계조직의 역사적 배경

⇒ 2차대전 이전 도도부현은 중앙정부와 상하관계였으나, 이후 새로이 지방체제를 정비하면서 지방의 통계조직은 도도현부 및 시구정촌에 국고부담의 통계 전임관리를 두어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운영. 다만, 농림수산성 등 일부 중앙부처의 경우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이 발효됨에 따라 많은 국가 기능이 지방에 이양되었으나, 통계부문은 국가가 생산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 통계부문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음

□ 현장조사 체계 관련

○ 농림수산성의 경우 총무성과 달리 도도부현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 및 현재도 지속적으로 자체 조사를 유지하는 이유는?

⇒ 농업부분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으로 농림수산성에서 직접 실시

○ 지자체 현장조사원들의 신분은 조사의 종류나 주기(매월조사, 연간 조사 등)에 따라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구분되는지?

⇒ 현장조사원은 비상근공무원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전임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사관리의 업무 수행

○ 통계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현장조사 체계를 지자체에서 총무성 통계국 산하조직으로 개편을 검토한 사례는?

⇒ 지방조사조직을 국가조직으로 검토한 사례는 없음

□ 지방통계기구 정비 관련

○ 통계 전임직원 배치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 인사교류는?

⇒ 과거에는 소수 인사교류가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 통계조사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휘감독은 어느 수준이고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는지?

⇒ 통계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해 조사 실시 기관 명시하고 통계기준의 명확한 설정, 각종 업무 회의 실시 및 보고체계 확립으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통계 관련 예산권으로 감독 강화

⇒ 지방의 통계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정부가 갖고 있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가 염려가 되므로 지방정부의 인사부서장에게 잦은 전보 지양, 통계담당자 연수와 교육 실시, 조사항목을 쉽게 하여 조사 관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

○ 위탁이나 지방교부세 등으로 효과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이 되는지?

⇒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휘 감독 기능임. 또한, 업무적 인간관계도 중시하고 있음

○ 국고부담 통계직원 수가 1947년 5,030명에서 2012년 1839명으로 순차적으로 삭감되게 된 배경은?

⇒ 조사자료의 집계업무 전산화(OCR 방식) 및 효율화 등 조사방식의 선진화 민간업체 위탁(소규모 조사, 온라인 및 우편조사 가능 조사, 조사협조가 양호한 조사 등)

⇒ 또한 통계인력의 감축은 통계행정 수요와 관계없이 정치적 이유로 삭감된 사례가 있음

○ 전임직원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 국세조사 결과, 지역면적, 업무량, 지자체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결정

□ 지자체를 통한 현장조사 체계의 장단점

○ 지자체를 통한 현장조사 체계의 장점은?

⇒ 대규모 조사의 경우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민간업체보다 지자체를 통하여 조사하는 것이 장점임

○ 지자체를 통한 현장조사 체계의 문제점은 없는지?

⇒ 보고체계 및 집계가 다소 늦으나 법령상 공표기한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표 일정에는 차질이 없음

- 통계의 일관성.통일성을 훼손하여 자료의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 실시하여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개개인의 실수로 인하여 정확성이 문제가 되는 사례는 가끔 있음.

* 통계법에 정확성 및 비밀보호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지자체별로 기관장의 성과나 이익을 위해 통계의 중립성이 훼손된 사례가 있는지?

⇒ 40년 전에 일부사례가 있었으나, 지금은 통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는 없음

- 이원화된 조사 체계로 통계생산의 신속성에 문제가 없는지?

⇒ 이원화로 인해 공표에 지장을 줄 만큼의 문제는 없음

- 신규통계 생산을 위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절차는?

⇒ 통계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지자체의 협력이 있어야 신규통계의 생산이 가능함. 신규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통계를 폐지.통합하는 방식이므로 신규통계 생산에 많은 제약이 있음.
최근에는 사업체조사 일부를 통합하여 경제센서스를 실시한 사례 이외에는 없음

□ 일본의 최근 통계조직, 예산, 인력 현황?

⇒ 별첨(추후 번역후 별도 게재)